

# 망원동 43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

2015. 9. 3.  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5. 8.21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5. 8.25.

다. 상정일자 : 제198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 (2015. 9.3.)
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주택과장 강 희 천

### 가. 제안이유

망원동 43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(정비구역등 해제) 제1항제1호 및 부칙 <법률 제11293호, 2012.2.1> 제12조에 의하여 법 시행일(2012.02.01)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신청이 없어 같은법 제4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.

### 3. 망원동 43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개요

#### 가. 구역현황

- 위 치 : 마포구 망원동 439번지 일대
- 면 적 : 1.1ha
- 추진경위
  - 2011. 10. 20 : 정비예정구역지정(시 고시 제2011-309호)
  - 2014. 04. 10 : 실태조사 결과통보 및 주민의견 청취
    - ※ 토지등소유자 285명 중 찬성 32.6%, 반대 5.6%로 구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 지정신청 불가(찬성 50% 이상인 경우 가능)
  - 2015. 05. 21 :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
    - ※ 공람기간 : 2015. 05. 21 ~ 2015. 06. 22일까지

#### 나.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

##### □ 정비예정구역 기본계획 내용

구 역 명	면적(ha)	계획 용적률	건폐율	층수	추진단계	비 고
망원동439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	1.1	190	60	평균층수 10	2	

#### 다. 주민 공람공고 결과

- 주민공람 의견 : 제출된 의견 없음

#### 라. 구역해제 사유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제1항제1호 및 부칙(법률 제11293호, 2012.2.1)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(2012.02.01)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함.

- 당해 구역은 실태조사 결과 찬성동의가 50% 이상인 경우 구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지정을 신청코자 하였으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, 또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예정구역 지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(2015.01.31)까지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없어 같은법 제4조의3 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 추진

#### 4. 향후 추진절차

-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(구→시)
-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→ 정비예정구역 해제여부 결정 및 고시(서울시)

#### 5. 검토보고 (김용범 전문위원)

- 본 구역은 망원동 43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(정비구역 해제) 제1항제1호에 의하여 법 시행일(2012.2.1)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없어 같은법 제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.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망원동 439번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은 이 법 시행일 2012.02.01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지정에 관련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.
- 당해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, 정비사업을 찬성하는 주민이 50% 이상인 경우 구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지정이 가능하지만, 실태조사 결과 찬성 32.6%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, 또한 토지소유자로부터 정비예정구역 지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2015.01.31까지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없었음.

- 따라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절차에 따라 주민의견공람 (2015.5.21~2015.6.22) 결과 이의신청 등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같은법 제4조의3(정비구역해제)제1항에 의거 “구청장이 시장에게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” 는 규정에 따라 본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제출된 의견청취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6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7. 토론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채택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: 없음